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No. 2021- |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 액(원) |        |
| ○○○○○     | 2021 | -      | -      | -      | 주의(1명) |

제 목 : 용역발주시 일상감사 누락

1. 현황

1) ○○○○○○ ○○○○○○ ○○○은 2021년 4월에 “○○○○○ ○○○○○○○ 기공식 용역”을 진행하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21.4.○○.일에 용역시행계획을 보고한 뒤 ○○○○○○에 발주를 의뢰하여 4월 ○○일에 계약체결하고 4월 ○○일에 계약체결을 통보 받았다.

2) 5월○○일 ○○○은 감사실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2. 감사 결과

1) 관계규정 및 법령(판단 기준)

가. 일상감사는 公社 『감사규정』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시행세칙 제7조(일상감사의 범위)의 별표1에는 일상감사 범위가 제시되어 있는데,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3천만원 이상 일반·학술용역의 계약체결’을 포함하고 있다.

2) 위법부당 내용

○○○○○○ ○○○○○○ ○○○은 “○○○○○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4월 “○○○○○ ○○○○○○○ 기공식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사규정 제3조 제5항과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있는 일상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였다.

3) 관계자 주장 및 판단

○○○은 ‘일상감사 범위가 2021.2.1. 일자로 「감사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기존 추정가격 1억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 이후에 알게 되어 즉시 감사부에 후속 조치사항을 요청하였다’고 2021년 5월 27일에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상감사는 公社 감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등, 주요 업무에 대해 계약 이전에 점검·검토하여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계약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이미 모든 계약사무가 종결된 업무에 대해 뒤늦게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와 진술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3. 처분요구내용

○○○○○ ○○○○○ ○○○이 “○○○○○ ○○○○○○ 기공식 용역”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행위는 公社 『감사규정』 제3조 제5항,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公社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6조(처분사유) 제1항에 따라 ○○ ○○○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합니다.(주의)

▶ ○○○○○ ○○○○○ ○○ ○○○ - 주의.